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의 효력 발생시기 변경〉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88호)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92호)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92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강유정 · 진선미 · 김한규 · 김우영 · 문정복 · 이용우
박희승 · 양부남 · 박상혁 · 위성락 · 강경숙 · 전재수의원(12인)

나. 제 안 일 : 2024. 12. 17.

다. 회 부 일 : 2024. 12. 18.

※ 의안번호 : 6588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김현정 · 이언주 · 민병덕 · 정태호 · 이학영 · 임오경
박균택 · 조승래 · 황명선 · 박 정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19.

다. 회 부 일 : 2024. 12. 20.

※ 의안번호 : 6692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이해민 · 김재원 · 김준형 · 서왕진 · 황운하 · 김선민

정춘생 · 차규근 · 신장식 · 강경숙(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7.

다. 회 부 일 : 2024. 12. 30.

※ 의안번호 : 699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안]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안]

헌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만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까닭으로 인해 소추의결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송달되는 시간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군경의 동원 등의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탄핵 소추 결정이 안정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음.

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 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4조제2항).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소추대상자에게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각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 정지 및 사직·해임 제한 효과의 발생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강유정의원안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해민의원안은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며, 김현정의원안은 탄핵소추 대상자 중 대통령에 한정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표-1] 국회의 탄핵소추 효력발생 시기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강유정의원안	이해민의원안	김현정의원안
입법목적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효력발생 시기 변경		
적용대상	모든 탄핵소추 대상자		대통령
효력발생 시점	본회의 의결시	국회의장 선언시	국회 의결시

1)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회인 소추위원회에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강유정의원안	김헌정의원안	이해민의원안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생략)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현행과 같음)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본회의의 탄핵 소추 의결 즉시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제134조(소추의 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생략)	제134조(소추의 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현행과 같음)	제134조(소추의 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현행과 같음)	제134조(소추의 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삭제>	② ----- ----- ----- ----- ----- ----- ----- ----- -----. <u>다만,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u>	②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 ----- ----- ----- ----- ----- ----- ----- -----.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함²⁾.

현행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직위를 살펴보면,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은 헌법에서 직접 명시³⁾하고 있고, 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 차장 ·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 특별검사보는 개별 법률에 탄핵소추 근거 규정⁴⁾을 두고 있으며, 탄핵의 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⁵⁾하고 있음.

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p.1309;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3)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 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를 송달 받은 때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제1항), 임명권자는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국회법 제134조 제2항).

현행법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 정지 및 사직·해임 제한 등의 법적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의결과 효력 발생에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실제로 과거 박근혜 前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소추 의결서 송달 시까지 약 2시간 53분이 소요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약 2시간 24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됨.⁶⁾⁷⁾

위와 같이 국회의 의결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이 상이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소추의결서 송달을 통해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전까지 소추대상자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5)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6)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노무현 前 대통령과 관련된 소요시간은 파악하지 못하였음.

7) 박근혜 前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국회 탄핵소추 의결, 19시 3분 소추의결서 송달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14일 17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19시 24분 소추의결서 송달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경우 즉시 소추대상자 (김현정의원안은 대통령 한정)의 권한행사 정지 및 사직·해임 제한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소추의결서 송달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3항⁸⁾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⁹⁾ ‘의결을 받은 자’의 의미가 송달·통보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소추 대상자가 의결 결과를 공식적으로 수령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탄핵소추가 의결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리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권한행사 정지 시점을 ‘국회(본회의) 의결시’ 또는 ‘국회의장 선언시’로 앞당기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둘째, 김현정의원안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 시기가 ‘대통령’은 ‘국회 의결시’로, 그 밖의 ‘소추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소추의결서 송달시’로 차등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8)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9)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서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은 지난 1960년 제3차 개헌을 통해 신설되었음.

「대한민국헌법(1960. 11. 29. 헌법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①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¹⁰⁾를 감안할 때 다른 소추대상자와 달리 즉각적인 권한정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 ②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동일한 법적 절차가 대상자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③ 「대한민국헌법」은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정족수¹¹⁾를 제외하고는 ‘대통령’과 그 밖의 ‘소추대상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해민의원안은 법적효력 발생시기를 ‘국회의장의 탄핵소추 의결 선언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선언’은 「국회법」 제113조¹²⁾에 따른 ‘표결결과 선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국회의 의사표시는 ‘의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유정의원안 및 김현정의원안과 같이 ‘의결시’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부합한다고 보임.

또한, 강유정의원안은 ‘본회의’ 의결시, 김현정의원안은 ‘국회’ 의결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유정의원안과 같이 ‘본회의 의결시’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임.¹³⁾

10)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1)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2) 「국회법」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13) 「국회법」 상 ‘본회의’는 ‘국회의 회의’를 의미함.

「국회법」 제8조(휴회)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문 의 처
02)6788-5016